

수신 각 체육관장

참조 사범

제목 심사비 관련 행정 지도 건

- 1. 귀 체육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: 대태협 제2013-174호 (2013.4.19)
- ▶ 국기원 심사 관리규정 제5조(심사수수료)
- ① 태권도 승품/단 심사에 응시하는 수련자에게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④ 위임받은 국가협회, 태권도단체, 기관은 발급수수료와 시행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항목별로 구분.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권고한다.
- 3. 위와 관련하여 각 회원 등록도장에서 응시자를 상대로 국기원 심사비 명목으로 심사비를 항목별 구분 없이 과다 책정하여 심사비를 받는 관계로 학부모 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일선 회원 등록도장에서는 응시자에게 심사비 부과 시 항목별로 구분하여 심사비를 통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항목별 구분:

국기원(발급수수료), 대태협(권리위임수수료), 울산태권도협회(시행수수료) 이상3개 기관,단체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매년 책정되어있음.

그 외는 각 도장에서 항목별로 구분하여 심사비를 고지하여야합니다.

(예: 특별훈련비, 지도자인건비, 교통비, 간식 및 기타 제작비 등)

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장(<u>변화</u>도

담당	김기연	사무국장	김옥태	전무이사	김호 전	
시행	울태협	제2013-086호	(2013.04.2	24) 접수	()
우. 6	31-270	울산광역시 중	구 염포로 8	85(남외동)	/	http://www.ulsantkd.org
저하 !	152)281-	-2455/2100 / Ā	선속052)292	-0166 / F-mai	1 :11	lsantk@hanmail net /곷개